

희망사다리 2018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노령층 30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복지서비스는
365일 24시간
활짝 열려있습니다

이 책은 사회보장위원회(www.ssc.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복지로(www.bokjiro.go.kr), 위클리 공감(gonggam.korea.kr)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책에 사용된 이미지는 공공의 목적 이외(상업용·판매용)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례|

소득·생활 지원

01	기초연금제도	04
02	긴급복지 지원제도	05
03	노후간급자금 대부 사업	08
04	노후준비서비스	08
05	은퇴금융 아카데미	09

주거지원

06	주택연금제도	10
07	행복주택 공급	12

건강·의료

08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15
09	노인 실명 예방	17
10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18
11	노인 틀니 지원	19
12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20
13	만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 지원	21
14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22
15	치매검진 지원	23
16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24



고용·일자리

17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	25
18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7
19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28
20 사회공헌활동 지원	28
21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	30
22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31

돌봄

23 노인돌봄기본서비스	31
24 노인돌봄종합서비스	32
25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33
2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4
27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35

사회참여·문화활동

28 고령층 정보화교육	36
29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	36
30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37



01

기초연금제도

① 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2018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만 6,000원

② 내용 매월 최대 20만 9,960원까지 지원(2018년 4월 기준금액)

- 단독가구 : 월 최대 20만 9,960원
- 부부가구 : 월 최대 33만 5,920원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최소 2만 원까지 차등 지급

③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만 65세 미만인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대상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 공지

④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basicpension.mohw.go.kr)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2018년 9월부터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과 소득은 어르신(단독, 부부)의 것만 반영됩니다.
(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과거에 탈락이 되었어도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자 가능 여부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02

소득·생활 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 ①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지원대상
위기 사유	①주 소득자의 소득상실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이유) ②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휴·폐업, 실직, 출소, 노숙)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5만 4,000원, 4인 기준 338만 9,000원) 이하
재산	•대도시 1억 3,5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 원 이하, 농어촌 7,250만 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 ② 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연장 횟수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료비 등) 지원	117만 400원 (4인 기준)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 비용 지원	64만 3,200원 이내(대도시, 4인 기준)	최대 12회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연장 횟수
사회 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117만 400원 (4인 기준)	최대 6회
교육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생 22만 1,600원 • 중학생 35만 2,700원 • 고등학생 43만 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9만 6,000원 (최대 6개월)	최대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60만 원 (쌍둥이 120만 원)	1회
장례비	장례비 지원	75만 원	1회
전기 요금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③ 방 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에 상담 후 신청

④ 문 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하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세요.

memo

03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 ① 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② 내용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750만 원까지)
※최대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 ③ 방법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
- ④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04

노후준비서비스

- ① 대상 국민연금 가입 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
- ② 내용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③ 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
- ④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국민연금공단 '내연금'(csa.nps.or.kr)

05

소득·생활 지원

은퇴금융 아카데미

- ① 대상** 은퇴준비에 필요한 경제금융지식 및 은퇴생활정보 교육이 필요한 사람
- ② 내용** 자산관리, 은퇴금융상품, 신용·부채관리 등 금융지식과 각종 생활정보 강좌 무료 제공
- ③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수강 지역과 일정을 선택해 신청
- ④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알려드립니다

교육과정과 교육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정규과정 : 4주(주1회 3시간, 총 12시간)
- 집중과정 : 2주(주2회 3시간, 총 12시간)
- 특화과정 : 일대일 상담서비스 제공
(세무, 법무, 노후재무설계) 정규과정 또는 집중과정 후 추가적으로 진행
- 찾아가는 은퇴금융 아카데미 : 1~2일(1일 1~2시간, 총 1~4시간)

06 주거지원 주택연금제도

- ① 대상**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부가 보유한 주택이 9억 원 이하인 어르신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 ② 내용**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지원
예시

집값이 3억 원인 60세 가입자는 매월 62만 30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91만 9,260원의 연금수령
(종신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18년 3월 기준)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해 의료비, 주택
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용도로 사용 가능

- ③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④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memo

알려드립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채무인수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연금 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이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나요?

이사 후에도 새로운 주택을 담보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 집값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산절차를 통해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memo

07

주거지원

행복주택 공급

- ①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과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계 층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고 령 자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p>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p> <p>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4,400만 원, 자동차 2,545만 원</p>

※2018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 100% 585만 원

※공급비율 : 젊은층 80%, 취약·노인계층 20%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 부부 90%, 고령자 10%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 ② 내용** 전용면적 45㎡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 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③ 방 법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 시스템을 통하여 청약
(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④ 문 의

- 자격진단, 모집지구 안내(www.happyhousing.c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blog.naver.com/happyhouse2u)
-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 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알려드립니다

무주택자란?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부모를 포함해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
해도 무방함)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함

자주하는
질문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행복주택 누리집(www.happyhousing.co.kr) 또는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blog.naver.com/happyhouse2u)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 1600-1004, SH ☎ 1600-3456)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하면 됩니다.

memo

08

건강·의료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① 대상 주민등록상 사업지역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사업지역 :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② 내용 • 병원진료일 알림서비스 : 병·의원 치료일 및 예약일에

알림 서비스 제공

• 교육·상담 서비스 : 환자가 가정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질환 및 영양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 의료비 지원(65세 이상) :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의 본인
부담금 매월 지원

※진료비 1,500원, 약제비 질환별 2,000원 지원

(고혈압, 당뇨병 모두 진료 받는 경우는 4,000원 지원)

③ 방법 사업지역 의료기관에 신청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 작성)

④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
(☎043-719-7433, 7440)

알려드립니다

병·의원이나 약국은 어디든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병·의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약국’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보건소를 통해 꼭 확인하세요.

병·의원 방문 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병·의원을 처음 방문할 때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 보험증’을 지참하고, 진료를 받기 전에 미리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동의서’를 작성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memo

09

건강·의료

노인 실명 예방

① 대상

구분	지원대상
노인 안검진	만 60세 이상 어르신(저소득층 우선)
노인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4인 기준 271만 1,521원) 이하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② 내용

구분	지원내용
노인 안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 2차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노인 개안수술	<p>백내장, 망막질환 등 안질환자의 개인 수술비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급</p> <p>※백내장 등 안질환 평균 약 24만 원, 망막질환 평균 약 105만 원 예상</p>

③ 방법 시군구 및 보건소에 신청

④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10

건강·의료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 ① 대상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환자
(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알려드립니다

부분 무치악이란?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 ② 내용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
(평생 2개)
<본인부담률>

기준일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2018년 4월 1일 (현재)	50%	20~30%	20%	30%
2018년 7월 1일 (시행예정)	30%	10~20%	10%	20%

- ③ 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 수급자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대상자 등록 신청

- ④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하는
질문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경우에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1

건강·의료

노인 틀니 지원

- ① 대상**
- 완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 부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② 내용**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 시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30%	5~15%	5%	15%

- ③ 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 수급자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대상자 등록 신청

- ④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memo

12

건강·의료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① 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치매환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어르신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증장애인

② 내용

- 독거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의 가정 내에 화재·가스감지기와 활동센서, 응급호출기 설치
-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알리고 119에 신고

③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④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memo

13

건강·의료

만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 지원

- ❶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 ❷ 내용 폐렴구균은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인플루엔자는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 ❸ 방법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보건소 및 예방접종 지정 의료 기관(인플루엔자에 한함)에 방문
- ❹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043-719-6848~50)

자주하는
질문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의 동시접종도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은 동시접종이 가능하며, 동시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특별히 지켜야 할 접종간격은 없습니다.

만약, 의사 예진 후 피접종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접종 일정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14

건강·의료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①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검진사업(1차 검진)으로 확인된 신규 암환자(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하위 50%인 만 18세 이상 원발성 폐암*환자
- *원발성 폐암 : 암세포가 폐에 처음 생긴 암
(다른 기관에서 생겨 폐로 옮겨진 경우 전이성 폐암이라고 함)

② 내용

암환자에게 최대 3년간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 연 최대 220만 원(본인 일부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 부담금 100만 원)까지 지원
- 건강보험 대상자 : 본인 일부부담금 연 최대 200만 원 까지 지원
- 폐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 일부부담금 연 최대 20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일부부담금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③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④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15

건강·의료

치매검진 지원

- ① 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진단·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0%(4인 기준 월 542만 3,042원) 이하인 어르신

- ② 내용**
-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 무료 실시
 -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 필요 시 전국 600여 개소 협약 병원에서 추가 진단·감별검사 실시 및 검사비 일부 지원

검사종류	검사내용	지원내용
선별 검사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간이정신 상태검사(MMSE-DS)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진단 검사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 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8만 원) 지원
감별 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종합병원급 8만 원, 상급종합 병원 1만 원) 지원

- ③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④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16

건강·의료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 ① 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542만 3,042원) 이하인 어르신
※초로기(45~60세) 치매환자도 기준 충족 시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 ② 내용**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급
- ③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④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MRI 검사비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치매 의심 단계의 MRI 검사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의 MRI 검사비를 30~60% 한도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단, 경도인지장애 진단 때 최초 1회 MRI 촬영 후 진료상 추가 촬영하는 경우와 60세 미만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MRI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아집니다.

17

고용·일자리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

- ① 대상** 정년 없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정 비율을 초과해 고용 중인 사업주
- ② 내용** 업종별 지정 비율을 초과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24만 원 지급
- ③ 방법**
 - 신청방법: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
 - 지원절차: 60세 이상 고령자 다수 고용(사업주) ⇒ 지원금 지급(사업주) ⇒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④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알려드립니다

시니어도 좋고 기업도 좋은 ‘시니어인턴십’ 기회를
잡으세요!

‘시니어인턴십’이란 만 60세 이상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 어르신의 직업능력 강화와 재취업기회를 높이고, 동시에 어르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넓히기 위한 사업입니다.

- 참여기업 :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참여어르신 : 만 60세 이상으로 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

- 지원내용 : 인턴기간(3개월) 및 계속고용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월급여의 50%를 기업에게 지원(참여 어르신 1인당 최대 270만 원) 등
 - 문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인턴십 사업 담당 (1577-1923)

memo

18

고용·일자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① 대상

구분	지원대상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재능나눔활동	만 65세 이상
취업·창업활동	만 60세 이상(기초연금수급자 가점 부여)

② 내용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구분	지원내용
공익활동	월 27만 원 활동수당 지급(월 30시간 이상)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경륜전수활동 등
재능나눔활동	월 10만 원 활동비 지급
취업·창업활동	노인 일자리 취업창업사업단에 운영비 지원 -노인 일자리 생산품(반찬, 셜틀콕 등) 제조·판매, 아파트 택배 등

③ 방법

주민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신청

④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하는
질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비도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비는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근로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19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 ① 대상** 가족이나 이웃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우울증, 자살 등의 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 ② 내용** 봉사, 취미활동, 운동, 일거리 등 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속적인 사회관계 형성 지원
- ③ 방법**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및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신청
- ④ 문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20

사회공헌활동 지원

- ① 대상** 만 50세 이상이고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퇴직전문인력으로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 ② 내용** 사회공헌활동 하루 4시간 이상 참여 시 활동비(참여수당, 교통비, 식비) 지급
- ③ 방법** 지자체 및 운영기관 공모 선정(고용부) ⇒ 참여자 및 참여 기관 모집·매칭(지자체운영기관) ⇒ 사회공헌활동 실시(참여자·기관) ⇒ 활동비 지원(지자체 운영기관)
- ④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알려드립니다

은퇴 후 도전할 수 있는 사회활동이 많아요!

특별한 기술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일자리

- **스쿨존지킴이사업** : 학생 등·하교 지도, 학교와 지역 사회 연계 활동 참가 등
- **문화재지킴이** : 각 지역의 문화재를 정화하고 관리하는 활동

전문 직종 종사 경험이 필요한 일자리

- 1~3세대 강사파견 : 교사나 관련 직종에 종사했던 인력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 파견되어 어린이 대상으로 한자 및 전통문화 등 교육
- 시험감독관 : 교직·공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관련 업무 경력 은퇴자(60세 이상)를 모집해 소정의 직무 및 소양교육을 거쳐 각종 임용 및 자격시험장에 감독관으로 파견

새로운 기술을 억혀 도전하는 일자리

- **주택관리사** : 아파트 관리과장이나 소장으로 여러 가구가 있는 단지를 관리, 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 후 '실버집'이나 '온누리넷' 등을 통해 취업 가능
 - 실버잡 : silverjobs.co.kr
 - 온누리넷 : onnet.co.kr
- **성남 시니어직업훈련센터** : 한국폴리텍에서 시니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업훈련센터로 보일러과정, 도배과정, 내선공사과정 등 새로운 기술을 배워 자격증 취득 가능

21

고용·일자리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

- ① 대상**
- 만 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
 - 만 40세 이상 숙련 퇴직인력과 만 39세 이하 청년간 팀을 구성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

② 내용

구분	지원대상
기술창업 센터	퇴직자의 경력·네트워크·전문성을 활용한 기술 창업 지원, 기술창업 지원 주관기관 운영비, 창업 공간, 상담 및 지원, 커뮤니티 운영, 기술창업교육 제공
세대융합 캠퍼스	숙련 퇴직인력과 청년 아이디어를 매칭하는 세대 융합형 창업팀을 발굴해 사업자금, 교육 및 멘토링, 사무공간 등 제공

- ③ 방법**
- 기술창업센터 : k-스타트업 회원가입 \Rightarrow 기술창업센터 회원 신청 및 승인 \Rightarrow 기술창업센터 회원카드 발급 \Rightarrow 기술창업센터 이용
※사무공간(지정석) 입주기업은 센터별 공간운영 현황에 따라 별도 모집 \Rightarrow 평가 \Rightarrow 선정 및 입주계약 체결의 절차를 거쳐 선발(단,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하여야 함)
 - 세대융합캠퍼스 : k-스타트업 회원가입 \Rightarrow 세대융합캠퍼스 모집공고일 이후 신청

- ④ 문의** k-스타트업(☎1357 \Rightarrow 3번, www.k-startup.go.kr)

22

고용·일자리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① 대상 사업별로 상이하며 취업취약계층* 우선 지원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장애인, 고령자(만 5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

② 내용 참여기간 1년 미만의 일자리

(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

③ 방법 워크넷에서 정부지원 일자리 모집공고 확인 후 온·오프라인 신청

④ 문의 •워크넷(www.work.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23

돌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① 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취약 독거어르신

② 내용 건강상태, 생활환경 변화 및 욕구를 파악해 안전 확인, 생활교육 및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안전 확인 서비스는 주 1회 이상 직접방문 및 2~3회 전화 확인

※생활교육은 생활관리사별 월 1회, 독거어르신별 분기당 1회
이상 실시

③ 방법 시군구청 및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신청

④ 문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4 돌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①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독거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또는 B 판정자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60%(4인 기준
직장 22만 8,701원, 지역 25만 4,055원) 이하인 어르신
•단, 단기기사서비스는 최소 2개월 이내 골절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어르신 중 65세 이상의 독거
어르신,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 부부
가구, 조손가정 어르신*이 대상
*만 19세 미만 아동과 동거하는 단독어르신 또는 고령의 어르신
부부 중 시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어르신

- ② 내용 1주일에 1일 3시간씩 주 2~3회 서비스 제공

유형	지원내용
방문 (9일, 12일)	신변·활동지원(식사 도움, 외출 동행, 목욕 보조 등), 가사 지원(청소·세탁, 취사 등)
주간보호 (9일, 12일)	보호시설에서 여가활동, 물리치료·언어치료, 급식 및 목욕, 가족 교육 및 상담 등 제공
단기기사 (월 24시간)	신변·활동지원(식사 도움, 외출 동행, 목욕 보조 등), 가사 지원(청소·세탁, 취사 등)
치매가족 휴가지원 (연 6일)	방문서비스 또는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어르신에게 단기보호서비스 추가 제공

- ③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 바우처 카드 발급
⇒ 모니터링 및 서비스 대상자 관리

- ④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5

돌봄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 ❶ 대상 학대 피해 어르신 및 그 가족, 학대행위자
- ❷ 내용
 - 학대 피해 어르신을 위한 전문 상담, 일시보호, 법률지원 제공
 - 학대 행위자 대상 교육 실시
- ❸ 방법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지원
- ❹ 문의 정부대표전화(☎110)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학대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체적 학대: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어르신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 방임: 어르신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어르신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
-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어르신을 버리는 행위

어르신 학대 사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26

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①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② 내용

구분	지원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요양 서비스와 목욕, 간호 서비스, 주·야간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제공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제공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지역,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요양비 월 15만 원 지급

- ③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

- ④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www.longtermcare.or.kr)

알려드립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전부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27

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 ①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경감적용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액)에
해당하는 사람

※ 4인 가족 건강보험료액 기준 예시

[지역] 5만 9,930원

[직장] 6만 9,110원(재산과표액 2억 4,000만 원 이하)

- ② 내용 본인이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50% 경감

- ③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 단, 소급 적용의 경우 유선신청 가능

- ④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1577-1000, www.longtermcare.or.kr)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족 수발자를 위한 '가족상담지원서비스' 확대

가족 수발자의 스트레스, 우울, 부양부담감 등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가족상담지원서비스'가 2018년 전국 30개 노인장기요양보헤훈영센터로 확대됩니다.

약 1,000명의 가족 수발자가 혜택을 누릴 예정으로, 정신건강전문 전문가와 함께하는 10주간의 전문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치매 등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중 부양부담이 높은 동거가족으로 별도의 선정 조사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세요.

28 고령층 정보화교육

- ① 대상 55세 이상
- ② 내용 컴퓨터 기초, 인터넷, 한글 등 OA, 누리집 제작법 등의 과정을 무료로 제공
- ③ 방법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문의 후 신청
- ④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 고령층 정보화교육
(☎053-230-1392, www.itstudy.or.kr)

29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

- ① 대상 어르신
- ② 내용 동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내에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문화 향유 지원
- ③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이용
- ④ 문의 거주지 인근 복지관 및 경로당

30

사회참여·문화활동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 ① 대상** 60세 이상(50대의 경우 참여가능 프로그램 별도 확인)
- ② 내용** 문화예술교육(악기, 연극, 무용, 사진, 전통분야 등), 문화예술동아리 등 어르신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
- ③ 방법** 문화원, 문화의집 등 가까운 문화시설 이용
※매년 문화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문화원연합회를 통해 주변 지역 문화프로그램에 대해 사전 문의 필요
- ④ 문의**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02-704-4332)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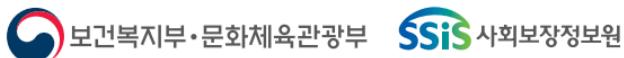
활기찬 노년을 위한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더 보기

- 어르신문화예술교육 : 어르신의 욕구와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 어르신문화예술동아리 : 어르신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 어르신&청년 협력프로젝트 : 어르신과 청년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만나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 아마추어 어르신의 찾아가는 공연
- 동네방네 문화로 청춘 : 어르신 문화예술동아리 간 교류 및 마을 축제

memo

memo

펴낸곳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기획관

홍보콘텐츠과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정보본부장

범부처정보지원부장

범부처정보지원부

인쇄 2018년 5월

디자인 비컴스(주) 02-541-2436

ISBN : 978-89-7820-984-7

발간등록번호 : 11-1352000-001921-10



이 책은 사회보장위원회(www.ssc.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복지로(www.bokjiro.go.kr), 위클리 공감(gonggam.korea.kr)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이 책에 사용된 이미지는 공공의 목적 이외(상업용·판매용)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복지서비스는
365일 24시간
활짝 열려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
www.gov.kr